

제2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5.8)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김 정 욱]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4 ~ 28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2014 ~ 29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 ~ 30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 ~ 31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5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제출일자 : 2014. 4.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 일자 : 2014. 5. 1.

2. 제안이유

- 군의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을 위촉하여 군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투자유치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위촉내용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 (현행) 위원장 1명 : 군수
 - ⇒ (변경) 위원장 2명 : 군수, 민간위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
- 나. 위원 중 의회의원 위촉 내용 삭제함(안 제3조제4항)
 -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13조 관련하여 위원 중 군의원 위촉내용 삭제
- 다. 상위법 개정조문 및 중앙조직개편 내용 반영함
 - 지식경제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3. 24. ~ 4. 13.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군의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을 위촉하여 군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 상위법 개정조문 및 중앙조직 개편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 하였으며,
-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 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정 2013.08.14 조례 제2157호]

제13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의안번호 제2014 - 29호>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4.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1.

2. 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별지서식의 용어 변경함(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24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합의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4. 4. 03. ~ 4. 2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내용을 일부개정 하였으며,

○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별지 제4호서식]

장학생신청서

장학생 성명	(한문 :)			
<u>생년월일</u>				
주 소	경남 거창군			
전화번호	집 :	휴대폰 :		
재학 학교	소재지	(우 -)		
	학 교		학 년	과 반
장 학 금 지급계좌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근로자 인적 및 취업사항

성 명	연령	장학생과 관 계	근속연한	회사명	근로자수	업종명
			년 월		명	

재 산 사 항 (군청 담당자가 기재함)

계	토 지		건 물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천원	m ²	천원	m ²	천원

※ 재산가액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위와 같이 거창군근로자자녀장학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근로자)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1부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4.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1.

2. 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거창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진입제한을 완화,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6조후단)

-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제52조제1항

⇒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 제54조제1항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5호 ⇒ 제3조제16호

- 매년 실시하는 관리인 교육을 3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부담을 완화함
-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함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규정에 의하여(의한) ⇒ 에 따라(따른)
- 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 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별지 제2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의견반영(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
 - 당초 : 1차 50, 2차 100, 3차 200만원
 - 수정 : 1차 40, 2차 80, 3차 120만원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4. 10. ~ 4. 30.
 - (나) 예고방법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거창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진입제한을 완화 개선하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식상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과, 「관광진흥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u>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u>	법 제21조제1항	40	80	120
<u>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u>	법 제21조제2항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u>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u>	법 제21조제2항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u>4.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법 제21조제2항3호			
가. 법 제7조,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		10	20	30
<u>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u>	법 제21조제2항4호	10	20	30
<u>6.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u>	법 제21조제3항	5	10	20

※ 비고 : “법”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설치연도							
	규 모		부 지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전문개정 2011.5.30.]

제17조(민간 위탁)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

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1.3.31.>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4.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1.

2. 폐지이유

- 과태료 부과기준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르면 되고,
- 1회용품 사용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으로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
-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삭제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원안의결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3. 28. ~ 4. 1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로 제정(2004. 2.10.조례 제1704호) 시행되어 왔음.
- 과태료 부과기준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0 조(과태료 부과) 별표 8 (2014. 2.11.개정)에 포함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고,
-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당해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14. 3. 28. ~ 4.17.까지 20일이상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바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22] [법률 제12319호, 2014.1.21, 일부개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 2014.1.21. >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품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고품연료제품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개정 2013.5.22. , 2013.8.13. >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4.1.21.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2.14] [대통령령 제25167호, 2014.2.11, 일부개정]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본조신설 2009.4.6]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호 제41조제1항제1	300	300	300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2호	300	300	300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30	50	1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3	5	1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	50	70	100
마.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4호	50	150	300
바.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5호	50	100	300
사.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6호	50	100	300
아.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	200	250	300
자. 법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2	200	250	300
차.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2호	30	50	100
카. 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품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8호	100	200	300
타. 법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고품연료제품을 공급하는 자	법 제41조제1항제9호	200	250	300
파.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10호			
1) 재활용지정사업자		200	250	300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하.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3호	50	70	10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7695호(2008.05.15)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 알림